> 도로 및 선로작업에서 리스크 감소를 위한 반사조끼 사용에 관한 지침

> > 2014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 연구위원회

에스텍 E엔C 김정훈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성청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1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4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BGI/GUV-I 8591, Information Warnkleidung, 2010
- KOSHA GUIDE C-52-2012,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
- DIN EN 471, Warnkleidung Pruefverfahren und Anforderungen, 2008
- 서울시,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가이드라인, 2009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4년 11월 2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도로 및 선로작업에서 리스크 감소를 위한 반사조끼 사용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도로 및 선로작업 시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반사조끼(복)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도로 및 선로(지하철, 기차 등)에서 반사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항과 유사한 작업에 적용한다. 다만, 경찰, 소방관, 응급구조대에 대한 반사조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

- (1) 도로청소, 쓰레기 수거, 측량작업, 조경작업, 제설작업, 작업구역 주변의 차량 유도작업, 교량 보수작업 등 교통지역 주변 또는 제한구역 밖에서의 작업
- (2) 선로의 설치, 유지보수, 변경 등의 작업
- (3) 지하철, 기차, 전철의 운행을 위한 작업
- (4) 주변 통행차량에 의한 리스크가 있는 공공도로에서 수리, 견인 작업 및 정비소(지역)에서의 수리작업
- (5) 차량, 크레인, 지게차 등의 이동이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작업
- (6) 선박 위나 항구 저장(창고)지역에서의 작업
- (7) 공항의 지정된 지역에서의 작업
- (8) 차량소통 지시작업

3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, 안전보건기술지침 "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" 및 안전보건기술지침 "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리스크 평가 지침"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반사조끼의 구비조건

4.1. 일반사항

반사조끼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(1) 반사조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(예, 작동되는 기계에 반사조끼가 말려들어 갈 수 있는 위험)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.
- (2) 작업장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(예, 필요 시 날카로운 부분에 대한 방호성 능을 포함하거나 필요한 방호성능을 가진 작업복과 함께 착용).
- (3) 작업자의 인체공학적인 조건과 건강상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
4.2. 세부사항

반사조끼는 착용자의 위치의 시각적 표시 등에 대한 다음의 세부사항이 필요하다.

- (1) 반사조끼는 주간의 다양한 조명조건에서 가시성과 어두운 야간의 차량 전조등 조건 에서 착용자가 분명히 확인되기 위한 형광소재와 재귀반사시트의 요구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.
- (2) 건설현장과 같은 옥외작업은 신체 온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조건(비, 바람, 추위)을 고려해야 하며, 기후(날씨)에 대한 방호기능도 포함하여야 한다.

(3) 반사조끼는 <표 1>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형광소재부분과 재귀반사시트의 최소면적 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분류(EN 471 High-visibility warning clothing)한다.

구 분	3등급	2등급	1등급
형광소재 [m²]	0.80 이상	0.50 이상	0.14 이상
재귀반사재 [m²]	0.20 이상	0.13 이상	0.10 이상
혼합성능재 [m²]	-	_	0.20 이상

<표 1> 반사조끼등급: EN 471

(4) 형광소재는 형광노랑, 형광주황 및 형광빨강으로 구분하며, 리스크 평가의 범위에서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어떤 형광색깔이 더 좋은 식별성을 갖는지 검토하여야 한다(예, 형광노랑은 형광주황보다 숲 주변이나 꽃밭에서 식별하기 어려움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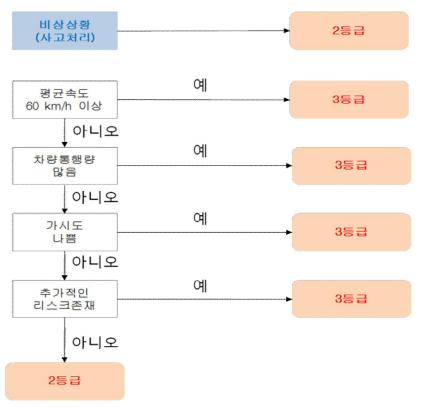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> 형광노랑과 형광주황의 반사조끼를 착용한 사람의 식별성

5. 반사조끼의 선정

- 5.1. 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한 반사조끼 선정
 - (1) 반사조끼의 선택은 수행해야 하는 작업, 작업방법 및 주변의 환경조건을 고려한 리스크평가의 결과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.
 - (2) <그림 2>는 도로교통 상황에 따른 반사조끼 선택에 대한 예시로, 이를 참조하여 반

사조끼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.



<그림 2> 도로교통 상황에 대한 반사조끼 선택 예시 : BGI/GUV-I 8591

- (3) 작업도구 등으로 인해 반사조끼의 반사시트와 형광소재를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, 경고효과는 모든 가시조건과 기후상태에서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(4) 반사조끼는 밀착하여 착용하며, 다른 옷으로 가리지 않아야 한다.
- 5.2. 기후조건을 고려한 반사조끼 선정
 - (1) 야외와 건설공사 작업에서 기후조건은 신체의 체온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- (가) 비, 바람, 추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.
 - (나) 비에 대한 방호로써 착용한 반사조끼는 작업진행 시 인체의 온도조절을 방해하지

X - 45 - 2014

않아야 한다.

6. 반사조끼의 사용

6.1. 도로영역에서의 작업

- (1) 건물에 근접한 곳에서 도로 건설, 유지 및 보수작업, 시설감독 및 쓰레기 수거를 하는 작업자들은 인도나 보호구역 외부에서 작업 시 눈에 잘 띄는 반사조끼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착용하여야 한다.
- (가) 반사조끼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리스크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.

추가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거나 건설공사현장의 보호구역을 벗어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반사조끼는 더 눈에 잘 띄어야 한다.

(나) 상체에 반사조끼를 착용할 때 하의에 형광소재의 줄무늬가 있는 경우 해당 줄무 늬가 작업 시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6.2. 선로에서 작업

- (1) 작업자가 선로에서 움직이는 철도차량에 충돌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반사 조끼의 착용이 필요하다.
- (2) 반사조끼 착용대상은 철도공사의 작업자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등으로 한다.

6.2.1. 철도분야 근무자

- (1) 철도분야의 기관사, 승무원, 지하철 운전사, 철도원, 차량정비원, 선로지시자 및 선로 관리자 등의 근무자는 다음의 반사조끼를 착용한다.
- (가) 2등급의 몸에 맞는 제품

X - 45 - 2014

- (나) 형광소재는 형광주황인 제품
- (2) 선로시설에서 하루 온종일 있는 철도원, 기관사, 정비원과 같은 근무자는 철도차량 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하므로, 3등급의 상의와 바지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인화성 물질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인화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6.2.2. 선로영역 작업

- (1) 반사조끼의 착용은 선로영역에서의 작업에 대한 리스크평가 결과로 도출된 안전방 호조치를 모두 대신하지는 않는다.
- (2) 철도분야의 리스크에 대한 "열차이동 시 안전지역에 위치"의 준수는 최우선이여야 한다. 만약, 의도하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반사조끼는 선로영역 밖에서의 작업에도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철도시설이나 다른 시설의 선로분야에서의 작업 및 검열, 측량, 제어작업을 실행하는 근무자는 다음의 반사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가) 2등급의 몸에 맞는 제품
- (나) 형광소재는 형광주황인 제품
- (4) 선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와 선로에서 안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반사조끼를 착용토록 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.
- (5)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는 다음의 반사조끼를 착용한다.
- (가) 2등급의 몸에 맞는 제품
- (나) 형광소재는 형광노랑인 제품

X - 45 - 2014

6.2.3. 선로작업을 처음 하는 작업자

- (1) 선로작업을 처음 하는 작업자는 선로에서 움직이는 철도차량으로 인한 충돌 리스크 가 더 클 수 있다.
- (2) 선로를 운영하는 산업체의 설비운영자, 물류관리자, 에너지산업의 근무자 등 선로작업이 낯선 사람은 다음의 반사조끼를 착용한다.
- (가) 2등급의 몸에 맞는 제품
- (나) 형광소재는 형광노랑인 제품

6.3. 반사조끼의 적절한 착용

- (1) 반사조끼의 착용이 가져오는 리스크 감소효과는 전형적인 작업자세를 전제로 하는데, 작업장비를 사용하여 물건을 운반할 때 반사조끼의 일부가 가려지는 정도에 따라 작업자의 식별성이 감소되면 리스크가 증가한다.
- (2)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3등급의 반사조끼가 필요하며, 다음과 같은 행위는 리스크를 증가 시키므로 자제하여야 한다.
- (가) 조끼를 개방한 채로 입는 등 부적절한 착용
- (나) 팔, 다리의 소매를 접거나 제거하는 행위
- (다) 변경된 의류 또는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착용하는 행위
- (라) 착용 의류 간의 부적절한 조합(조끼나 상의, 하의 등의 중복 착용)

6.4. 보관, 관리 및 교체

- (1) 반사조끼는 항상 건조하고,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(2) 자외선에 의해 형광색이 눈에 띄게 퇴색되므로, 반사조끼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

X - 45 - 2014

관되어야 한다.

- (3) 차량 안에서 반사조끼를 자동차 좌석이나 창문에 직접적으로 놓거나 걸어놓지 말아야 한다.
- (4) 정상적인 사용연한과 기타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대 관리주기에 따라 반사조끼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5) 반사무늬는 손상되거나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반복사용을 통한 잘못된 관리와 오염은 주의하여야 한다. 만약, 오염, 노후화 등으로 반사조끼의 식별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.
- (6) 반사조끼가 생물학적 요인으로 오염이 되면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개인적으로 세탁하지 않아야 한다(전문적이고 적합하게 세척, 소독, 건조 및 방수처리).